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시행세칙

제 1 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37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입회 및 퇴회

제2조 (입회절차) ① 본회의 정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신청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3조 (퇴회절차)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면 퇴회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무

제4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당 50만원 이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수석부회장의 임무)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께 위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인사, 문서, 본회 업무 관련 섭외, 지부관리 및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재산관리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편집이사는 회지 및 논문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강연 및 세미나 등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연구회 및 국내 학술연구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제 규정의 정비 및 발전방향 연구 등의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6. 사업이사는 연구 및 조사업무와 표준 및 규격제정 등의 용역사업과 교육 및 교재 편찬, 광고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산학협동이사는 정보디스플레이 산학협동 연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증진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상기 1 및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 4) 상기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8조 (상근직원) 본 학회에는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원을 두고 이의 시행은 사무국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위 원 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기금관리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포상위원회
 5. KIDS DISPLAY SCHOOL 위원회
- ② 회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규칙)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각 위원회의 규칙에 따른다.

② 각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연 구 회

제11조 (연구회 설치) ① 본 학회에는 전문 분야별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신설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연구회 신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연구

회 담당 부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안할 수 있다.

1. 연구회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 담당 부회장은 30일 이내에 기존 연구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기존 연구회와의 업무내용의 중복성 등을 심의하여 차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상정된 연구회 신설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연구회 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연구회 조직)

- ① (운영위원회) 각 연구회는 연구회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연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원) 각 연구회는 연구회 회장 1인, 연구회 간사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회 회장과 간사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회 간사는 연구회장이 임명한다.
 4. 임기 중 연구회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③ (회원) 본회의 회원은 1개 이상의 연구회를 선택하여 연구회 회원이 된다.
- ④ 위원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연구회 업무 및 사업)

- ① (업무) 연구회는 해당 전문 분야의 학술 교류와 기술 진흥에 힘쓴다.
- ② (사업) 연구회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회의 의무)

- ① (보고) 연구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경과와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신임 임원 명단 포함)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구회는 연구회 회원의 활동소식을 본회에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학회지(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에 관련 연구 현황을 투고한다.
- ② (Overhead 납부) 연구회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학회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행 시 본회의 “연구회 재정관리 방안”을 준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

본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회 재정관리 방안”을 따른다.

제16조 (연구회의 폐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폐지한다.

1. 1년간 사업 활동이 전무한 경우
2. 1년 이상 사업 및 회계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회원의 참여가 없어 연구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더 이상 연구회의 존속이 어렵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 6 장 지 부

제17조 (지부의 설치) 본회의 지부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그 지역 내에 정회원 20명 이상이 거주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지부임원의 정원) 본회의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지부이사 약간명
4. 지부감사 2인

제19조 (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임원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지부규칙에 따른다.

제20조 (지부장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임원의 명단
2. 지부 및 소속 회원의 활동소식
3. 지부의 사업계획: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4. 지부의 결산: 매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지부 규칙) 지부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간 행 물

제22조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간행물을 발간한다.

1. 학회지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2. 논문지 (Journal of Information Display)
3. 기타

제23조 (배부) 학회지 및 논문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할 경우 배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 8 장 포 상 및 장 려

제24조 (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보 디스플레이 관련분야의 학술연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25조 (연구보조비) 정보 디스플레이 관련분야의 학술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장학금 지급) 본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및 장려실시) 본회에서 실시하는 포상 및 장려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 9 장 명예회장 및 고문

제28조 (명예회장)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를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의 수는 1명 이내로 하고 전임회장만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다.

제29조 (명예회장의 임기)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명예회장의 임무)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본회 운영 자문을 한다.

제31조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를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1. 제 29조에 의해 물러난 전임명예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기존의 고문들과 고문단을 구성한다.

제32조 (고문의 임무)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자문을 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세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세칙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